

계약직 직원 규정

(제정) 2014.04.28. 규정 제11호
 (일부개정) 2016.03.15. 규정 제31호
 (일부개정) 2016.09.07. 규정 제41호
 (일부개정) 2017.09.05. 규정 제54호
 (일부개정) 2018.08.06. 규정 제63호
 (일부개정) 2019.05.29. 규정 제68호
 (일부개정) 2019.09.20. 규정 제75호
 (일부개정) 2019.12.30. 규정 제80호
 (일부개정) 2020.07.21. 규정 제85호
 (일부개정) 2022.01.17. 규정 제119호
 (일부개정) 2023.03.29. 규정 제139호
 (일부개정) 2024.01.31. 규정 제150호
 (일부개정) 2024.07.05. 규정 제158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김해시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직제 및 정원 규정」 제7조의1에 따른 계약직 직원의 채용조건 및 임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07.>

제2조(정의) ① “채용”이라 함은 계약직의 정원이 부여된 직무에 적합한 근로자를 모집, 평가, 선발하여 해당직무에 근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② “채용계약”이라 함은 계약직 직원이 재단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한다.

제3조(계약직 직원의 범위 및 채용기준) ① 계약직 직원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② 계약직 직원의 채용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일반 계약직의 경우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자격기준 추가 및 연구계약직의 채용 자격기준은 사회복지 분야별 연구목적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09.20., 2020.07.21.>
 ③ 일반계약직 나급·다급 및 전문계약직은 「인사관리 규정」에서 정한 근무상한 연령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09.07., 2018.08.06.>

제4조(채용결격사유) 대표이사는 「인사관리 규정」 제1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0.07.21.>

제5조(채용절차) ① 대표이사는 정원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채용계약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계약직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일반·연구계약직은 일반직의 정원 범위 내에서 한시적 필요에 따라 일반직을 대체하여 채용할 수 있고, 채용절차는

공개경쟁시험 및 경력경쟁시험 서류심사, 필기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채용시험에 대한 사항은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에 따르되 면접시험 실시에 따른 면접위원 구성은 제5조의2(면접시험 위원 구성)에 따른다. <개정 2019.09.20., 2019.12.30., 2020.07.21.>

② 대표이사가 계약직 직원의 정원에 대한 시장의 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 근거 법령, 사업의 필요성, 채용 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직이 아닌 직종의 정원 승인 요청에 대하여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계약직으로 변경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0.07.21.>

제5조의2(면접위원 등 구성) ① 대표이사는 계약직 직원 채용 시 마다 새로이 면접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21.>

② 삭제 <2020.07.21.>

③ 면접위원은 5인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단 외부 전문위원을 1/2이상 포함하여 구성해야 한다.

1. 시 업무담당 국장 또는 과장
2. 경제·경영전문가
3.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4. 공인회계사
5. 대학교수
6. 복지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19.12.30.]

제6조(계약직 직원의 보수) ① 계약직 직원의 등급별 기본연봉 기준표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03.15., 2018.08.06., 2022.01.17.>

② 계약직 직원의 보수는 「보수 규정」에 따라 책정하고, 매월 보수를 12분의 1로 지급한다.<개정 2016.03.15.>

③ 대표이사는 연구계약직 및 전문계약직 직원의 초임 기본연봉을 결정할 때에 [별표 3]을 기준으로 대상자의 경력, 업무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본연봉액을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6.03.15., 2019.09.20., 2020.07.21.>

④ 계약직 직원에게는 제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⑤ 계약직 직원의 제수당 계산 시 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을 준수한다.

⑥ 계약직 직원의 복리후생비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8.08.06.>

제7조(채용기간) 계약직 직원의 채용기간은 2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제8조(채용기간의 연장) ① 대표이사는 일반계약직의 채용기간을 연장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정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필요 기간까지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 2020.07.21.>

② 대표이사는 전문계약직이 담당하는 사업이나 업무가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된 기간 내에 종결되지 아니하여 채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초 채용기간의 범위 안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07.21.>

제9조(채용계약의 해지) 대표이사는 계약직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21.>

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 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3. 기타 채용계약 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된 때

제10조(근무실적평가) ① 대표이사는 채용된 계약직 직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 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연장 또는 해지 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07.21.>

② 제1항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사관리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6.03.15.>

제11조(다른 규정의 준용) 계약직 직원의 인사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인사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규정 제12호 2014.0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4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승계에 따른 특례) 김해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서 고용승계되는 계약직 직원의 경력, 임금, 인사, 근로계약 등의 사항은 고용승계 전 공단의 것을 승계하며 이를 이유로 변경하지 아니한다.

부칙<규정 제32호 2016.03.1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42호 2016.09.0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54호 2017.09.05.>

이 규정은 이사회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직급보조비 및 가족수당은 2017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63호 2018.08.06.>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68호 2019.05.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75호 2019.09.2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80호 2019.12.30.>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채용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시행 후 채용된 자에 한해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85호 2020.07.2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19호 2022.01.17.>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39호 2023.03.29.>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정 제150호 2024.01.31.>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4”는 2024. 1. 1.부터 적용한다.

부칙<규정 제158호 2024.07.05.>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개정 2017.09.05., 2019.09.20., 2020.07.21.>

계약직 직원의 범위

직 군	직 렬	담당직무
일반계약직	「직제 및 정원규정」 제7조의2에 따른 일반직 직렬 준용	일반직 직무
연구계약직		사회복지 분야별 정책연구 및 복지모델 개발 직무
전문계약직	사회복지분야	노인건강증진

[별표 2] <개정 2018.08.06., 2019.09.20., 2020.07.21.>

계약직 직원 채용 경력 및 자격 기준

직군	직급	경력 및 자격 기준	비고
일반 계약직	나	○ 공무원 5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6급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15년 이상인 사람	
	다	○ 공무원 6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 7급으로 해당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사람	
	마	○ 공무원 9급 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사람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사람	
연구 계약직	라	사회복지 분야별 연구목적에 적합한 자격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선정	
	마		
전문 계약직	라	의사면허 자격증 소지자	

※ 일반계약직의 경우, 직무에 적합한 별도의 자격기준을 인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음.

[별표 3] <개정 2017.09.05., 2018.08.06.>

계약직직원의 등급별 기본연봉 기준 및 연봉한계액

직급	기본연봉 기준	연봉한계액	
		상한액	하한액
다	일반직 4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6급(상당) 하한액
라	일반직 6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상한액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8급(상당) 하한액
마	일반직 7급 기본연봉상당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13 제5호의 가목 “임기제 공무원” 9급(상당) 상한액	

비 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 하더라도 해당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4] <개정 2017.09.05., 2018.08.06., 2020.07.21., 2023.03.29., 2024.01.31., 2024.07.05.>

제수당 지급기준표

구분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고	
1. 상여수당	① 정근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미만 : 미지급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 3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 4년 미만 :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	
	② 정근수당 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이상 : 월 100,000원 · 15년 이상 20년 미만 : 월 80,000원 · 10년 이상 15년 미만 : 월 60,000원 · 5년 이상 10년 미만 : 월 50,000원 <추가가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무연수 25년 이상 : 월 30,000원 · 근무연수 20년 이상 25년 미만 : 월 10,000원 	-	
2.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의 수는 4인 이내 · 배우자 : 40,000원 ·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자녀 : 월 30,000원 - 둘째 자녀 : 월 70,000원 - 셋째 이후 자녀 : 월 110,000원 · 배우자와 자녀를 제외한 부양가족 : 1인당 월 20,000원 	·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 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	
3. 특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① 의료업무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직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의: 월 850,000원 이하 - 일반의: 월 750,000원 이하 · 약무직렬: 월 70,000원 · 간호직렬 및 의료기사 : 월 50,000원 	· 전문의는 「의료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 하며, 일반의는 전문의를 제외한 「의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로 한다.
		② 기술정보수당	가) 전기, 기계, 전산, 조경, 토목, 건축, 운전, 조리의 해당 기술정보분야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 나) 「전기사업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담당자 및 보조원으로 선임된 사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하여 도시가스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직 나급 : 월 50,000원 이하 · 계약직 다급 : 월 30,000원 이하 · 계약직 라급 이하 : 월 20,000원 이하 ※ 기술정보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자격취득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근무하는 자 및 운전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자에게는 가산금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사·건축사 : 월 100,000원 이하 - 기능장·기사 : 월 30,000원 이하 - 산업기사 : 월 20,000원 이하 - 운전업무 종사자 중 일반5급 : 월 10,000원 - 운전업무종 사자 중 일반6급 이하 : 월 20,000원
		③ 특수직무수당	· 사회복지업무를 상시적으로 직접 담당 하는 자 : 월 70,000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제1항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게 월 30,000원 가산금 지급

구분	수당명	지급률 및 지급액	비고
4.초과 근무 수당	① 시간외 근무수당	· 통상시급×1.5×시간	-
	②휴일근무수당	· 통상시급×1.5×시간	-
	③야간근무수당	· 통상시급×0.5×시간	-
5.성과 상여금	성과금	· 매년 개인별 업무성과에 따라 지급	-
6.관리 업무 수당	관리업무수당	· 월 봉급액의 9%	매월 1일에 지급한다.
7.기타	연차수당	· 통상시급×8시간×일수	-

다만, 기술정보수당 받는 자 중 가)항목의 운전분야 및 나), 다)항목에 해당되는 자를 제외하고는 특수업무수당 상호간에 병급 할 수 없다.

[별표 5] <개정 2018.08.06., 2019.05.29., 2020.07.21., 2023.03.29.>

복리후생비 지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지 급 액		비 고
① 직책수행비	계약 나	월 100,000원		월정액으로 지급
	계약 다	월 50,000원		
② 직급보조비	계약 나	월 250,000원		보수지급일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날
	계약 다	월 185,000원		
	계약 라	월 175,000원		
	계약 마	월 175,000원		
③ 정액급식비	직원	월 140,000원		보수지급일 또는 대표이사가 정하는 날
④ 명절휴가비	직원	지급기준일	지 급 액	
		설 날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추 석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60%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16.03.15.>~~